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05504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0550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59215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A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7. 6. 14.

판결 선고 2017. 8.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5921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2014. 9.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82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은 A이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1차 신용보증약정	2010. 12. 21.	90,000,000	2011. 12. 20. (2014. 12. 19.)	연 12%
2차 신용보증약정	2011. 9. 23.	90,000,000	2012. 9. 21. (2014. 9. 17.)	연 12%

2)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12. 23. 위 1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1. 9. 26. 위 2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각 변제기는 보증기한의 변경에 따라 2014. 12. 19.과 2014. 9. 17.로 각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신용보증채무 이행

1) A은 2014. 9. 18.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17.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 28.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181,025,733원[(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90,000,000원+이자 250,456원) +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90,000,000원+이자 775,2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A으로부터 72,490원을 회수함에 따라 대위변제 잔액은 180,953,243원이 되었고, 위약금 297,610원과 확정손해금 23원이 발생하였다.

다.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의 말소

1) A은 2014. 9. 30. 중소기업은행과 정유회사에 대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직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은 2014.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A은 2013. 4. 29.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0. 15. 말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00,000,000원이었고, 2014. 10. 6.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401,824,000원이다.

라.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폐지

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22. A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2014개회63737호 사건)이 내려짐에 따라 A이 원고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2) 한편 2017. 3. 27. A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원고가 A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여축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81,250,876원(대위변제금 잔액 180,953,243원+위약금 297,610원 + 확정손해금 2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80,953,243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14. 9. 1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2014. 11. 2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A의 사해행위 및 피고의 사해의사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A이 C과 D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A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매매대금도 부당한 염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을나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4 내지 21, 25 내지 3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C,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그 상당 부분이 A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6.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01,824,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이었다.

(나) A은 피고의 형 C로부터 2013. 5. 16.부터 같은 해 9. 13.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의 형수 D로부터 2014. 8. 14.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A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8,000만 원을 피고가 A의 위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같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A은 2014. 10. 10. 피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7,000만 원을 계좌로 수령하였고, 같은 날 현대오일뱅크, 아산에너지, 하나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에 합계 66,143,026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A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C과 D는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정당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가 A의 C과 D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판결 등 참조). 피고와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채무인수 승낙 여부에 관하여 C과 D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C과 D에게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C이나 D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채무인수가 A의 소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 C과 D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현대오일뱅크 등에 대한 채무 66,143,026원 등 합계 446,143,026원의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있었고, 1억 8,000여만 원의 구상금채무가 곧 발생할 상황이었다. A은 전체 채무액이 6억 2,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위 구상금채무액이 적지 않음에도 위 구상금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다) A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지 불과 12일 후에 채권자의 동생이자 자신의 직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그 마저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다. 이는 C와 D의 채권이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변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 한편,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매 중인 부동산을 예상경락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로써 경매를 취하시키는 한편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질권 설정 등을 통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력을 상당 부분 유지한 사안이다. 위 판결은 채권자의 동생이자 직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변제자력을 전혀 유지하지 못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2) 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재산상태를 알지도 못하였고, 정당한 가격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2,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이 사건 매매대금은 그 무렵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였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대위변제, 7,000만 원의 현실 지급, 채무의 인수 등으로 전부 지급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A의 주유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부여축산업협동조합과 C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A의 주유소에서 수년 간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증인 I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같이 동석했던 세무 관련한다는 사람이 개인채무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거론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불과 12일 만에 사장과 직원 사이에 체결되었다. 또한 A은 매매대금 중 무려 3억 8,000만 원을 채무인수 또는 대위변제로 갈음하였고,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수령하자 같은 날 5,390만 원을 유류공급업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급하게 처분하여야 할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일부 채권자들에 대하여만 변제가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하여는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00,000,000원이고, 2014. 10.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401,824,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 위 시가가 변동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01,824,000원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에 미달하므로, 위 101,824,00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101,82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01,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임성근

판사김구년

판사박효선

별지